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6가단10491 손해배상(지)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단천
담당변호사 정공진
피 고 1. 주식회사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린
담당변호사 류수연, 이현수
변 론 종 결 2026. 6. 11.
판 결 선 고 2026. 7. 23.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1. 2. 20.부터 2026. 1. 7.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D'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저작권자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04. 10. 5.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은 2021. 5. 6.부터 현재까지 피고 B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C의 저작권 침해 등

1) 피고 C은 피고 C이 운영하는 피고 B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1대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하였고, 2021. 2. 20.경부터 2022. 5. 1.경까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2) 피고들은 2023. 1. 31. 수원지방법원 2022고약16346호로 아래와 같은 범죄 사실로 저작권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러한 약식명령은 2023. 3. 21.(피고 C), 2023. 2. 18.(피고 B) 각 확정되었다.

피고 C은 피고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 화성시 E에서 통신기구물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 C



누구든지 저작권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C은 2021. 2. 20.경부터 2022. 5. 1.경까지 피고 B 내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에 원고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D'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한 후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 B

피고 B은 피고 B의 대표자인 피고 C이 피고 B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저작권자인 원고의 사용허락 없이 피고 B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1대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한 후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대표자인 피고 C이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원고에 가한 손해를 피고 C과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의 직원이 이 사건 프로그램이 설치된 PC를 구매하였으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러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C을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2022년 6월경 손해 및 가해자를 인식하였는데, 원고는 3년이 지난 2025. 9. 5. 피고들을 상



대로 조정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한다. 그 인식은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손해의 발생사실뿐만 아니라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 즉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뜻한다. 이때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손해를 안 시기에 대한 증명책임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46573 판결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2년 6월경 피고 C을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손해배상의 범위를 포함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정도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1)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 등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04137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프로그램은 기능에 따라 복수의 하위 모듈(Module)로 구성되어 있고, 금액은 각 모듈 또는 여러 개의 모듈의 조합에 따라 정해져 있는 점, ②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자들은 필요한 기능에 따라 하위 모듈 중 일부 또는 여러 개의 하위 모듈을 조합하여 구매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C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하위 모듈 중 일부를 복제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프로그램 중 10개 모듈이 포함된 불법 복제물을 복제하였는데, 피고 C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모듈 10개를 모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이 171,211,240원[원고는 171,211,240원 중 일부로 3,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을 초과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6조). 피고들의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 침해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저작권



법 제125조 제2항의 '저작재산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복제권 침해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한다.

앞서 든 증거,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 C의 이 사건 프로그램 복제 경위 및 업무상 사용 경위,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 기간, 피고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열람 목적으로만 사용하였고 이 사건 프로그램의 뷰어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C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C이 이 사건 프로그램으로 열람만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사용한 모듈에 관한 설명에 피고들은 10개 모듈 중 가장 저렴한 모듈을 사용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피고 B의 업무 내용 및 생성한 자료를 근거로 객관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은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 복제물 취득 후 업무상 사용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을 3,100만 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21. 2. 20.부터 2026. 1. 7.(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민법)의, 2025.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18

판사 임경옥